

1. 개정이유

주차장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 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진출입로 보행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설계 및 건축인허가 업무 혼선 해소를 위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 도입(안 제6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는 8.5퍼센트 이하, 곡선부분에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나. 주차장 진출입로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안 제6조제1항제10호 개정)

노외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

다.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5호나목 개정)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내변반경 기준이 적용되는 곡선 부분은 경사로에 한정하여 규정

라.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도입(안 제11조제7항 신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중 “곡선 부분은”을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으로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경사로 시·종점에는 다음 1)부터 3)까지에 따라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 이하,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오르막 경사로의 종점이 도로 또는 보행자의 통행로에 접한 경우 길이 3.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볼록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종점에 길이 1.7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오목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종점에 길이 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을 “출입 자동차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 신체장애인 등의 통행 편의, 도로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자동차의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

하도록 할 것

제11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 특례) 시행일 당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①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현행과 같음)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u>곡선 부분</u> 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u>경사로의 곡선 부분</u> 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	다.~라. (현행과 같음)

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마. 경사로 시·종점에는 다음 1)부터 3)까지에 따라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 이하,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오르막 경사로의 종점이 도로 또는 보행자의 통행로에 접한 경우 길이 3.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볼록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종점에 길이 1.7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주

<u>마.~바.</u> (생략) 6.~9. (생략) 10. 노외주차장에는 <u>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11.~16. (생략) ②~⑦ (생략)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①~⑥ (생략) <u><신 설></u>	<u>차장의 경우 오목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종점에 길이 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u> <u>바.~사.</u> (현행 마목에서 바목까지와 같음) 6.~9. (현행과 같음) 10. 노외주차장에는 <u>출입 자동차의 안전, 보행자의 안전, 신체 장애인 등의 통행편의, 도로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u> <u>가.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보행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u> <u>나. 자동차의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할 것</u> 11.~16. (현행과 같음) ②~⑦ (현행과 같음)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①~⑥ (현행과 같음) <u>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u>
---	--

장에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
치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